

# 자진 출두신고 안내

~불법체류로 고민하고 계신 외국인 여러분께~

법무성 입국관리국

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는 출국명령제도의 홍보활동이나 ‘체류특별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’의 개정 등을 통해 불법체류로 고민하고 계신 외국인들이 지방 입국관리 관서에 쉽게 출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여, 자진 출두를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○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로 일본에서 생활하고 계신 외국인 중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분은, 수용되는 일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수속을 진행시킬 수 있는 ‘출국명령제도’를 이용하여 귀국할 수 있습니다.

- 강제퇴거 절차에 의해 귀국한 경우에는 최소 5년간 일본에 입국할 수 없지만, ‘출국명령제도’에 의해 귀국한 경우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기간은 1년간입니다.
- 다음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‘출국명령제도’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- 가. 신속히 일본에서 출국할 의사를 가지고 입국관리 관서에 자진 출두할 것
  - 나. 체류기간이 지난 것 외에 다른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
  - 다. 입국 후 절도 등 소정의 범죄로 인해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일이 없을 것
  - 라. 과거에 강제퇴거를 당했거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적이 없을 것
  - 마. 신속히 일본에서 출국할 것이 확실히 예상될 것

○ 귀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으로서 ‘출국명령제도’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입국관리 관서에 자진 출두한 분의 경우, 가방면을 허가하여 수용되는 일 없이 수속을 진행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.

○ 계속 일본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분은 먼저 입국관리 관서에 출두하여 일본에서 생활하고 싶은 이유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.

- 지난 번에 개정된 ‘체류특별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’에는 체류특별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의 적극적 요소로서 일본인과 혼인이 성립된 경우 외에 ①입국관리국에 자진 출두하여 신고할 것, ②일본의 초등·중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며 상당 기간 일본에서 생활한 친자를 보호감독 및 양육하고 있을 것, ③일본에서의 체류기간이 오래되고 정착성이 인정될 것 등이 제시되어 있으므로, 이 가이드라인을 잘 읽어 주십시오.

예를 들어 ③에 해당하고 다른 법령위반 등이 없는 분이 자진 출두신고를 한 경우에는, 체류특별허가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.

- 또한 적발 등으로 위반이 발각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용되게 되지만, 자진 출두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방면을 허가하여 수용되는 일 없이 수속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.
- 별지와 같은 강제퇴거 수속을 하는 동안에 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, 법무대신이 특별히 일본에서의 체류를 인정한 경우에는 불법체류 상태가 해소되고 정식 체류자 자격으로 일본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 체류 특별 허가는 적극적 요소와 소극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므로, 결과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.

## 불법체류자

현재 체류자격이 없어 불법체류 상태이다.  
일본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.  
입국관리국에 자진 출두신고



### 입국경비관의 위반조사

【사안에 따라 본인이나 증인의 출두, 자료 제출이 필요】



### 수용명령서에 의한 수용

【가방면을 허가하여 수용되는 일 없이 수속을 진행시키는 것이 가능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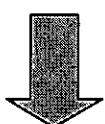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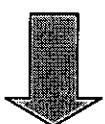
### 입국심사관의 위반심사



### 특별심리관의 구두심리



### 법무대신의 재결



### 체류특별허가

### 강제퇴거명령서 발부·송환